

제 정 : 2021.01.04.

보상위원회 규정

2021.01.04.



보상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 48 조 및 이사회 규정 제 9 조에 의한 보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 및 기능)

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보상정책 수립 및 보상수준 결정
2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4 조 (구성 및 위원장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-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

제 2 장 회 의

제 5 조 (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 일전에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제 8 조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2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6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7 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연간 등기임원 보수한도 승인
 2.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회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검토
 2. 신규임원 보수수준 타당성 검토
 3. 임원 양성 및 승계 프로그램 검토
 4. 기본연봉 조정 검토
 5. 성과급(격려금) 재원 및 지급방식 검토
 6. 퇴임임원 보상방안 검토
 7.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.
 1. 연간 보수 집행현황 보고
 2.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8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9 조 (자문)

위원회는 독립성 요건을 만족하는 보상전문가 및 법무팀으로부터의 자문, 기타 보상과 관련된 독립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제 10 조 (통지의무)

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2 조 (간사)

-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제 13 조 (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)
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